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48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김교홍 · 문진석 · 임오경
윤준병 · 민홍철 · 장철민
한병도 · 서미화 · 박수현
이기현 · 진성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중 “보호에 관한 시책”을 “보호 종합대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저작권 <u>보호에 관한 시</u> <u>책 수립 등</u>)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시</u> <u>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제2조의2(저작권 <u>보호 종합대책</u> <u>의 수립 등</u>) ① ----- ----- ----- <u>사항</u> <u>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u> <u>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
1. ~ 3.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u> <u>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u> <u>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u> <u>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u> <u>다.</u>
② <u>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u> <u>·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u> <u>합대책 및 추진계획의</u> ----- ----- -----.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u> <u>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 ----- <u>7년</u> ----- <u>1억원</u> ----- -----.
1. · 2. (생 략) ②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